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방향

A plan to advance the national standard system

박찬복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요 약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는 것과 같이 한반도 주변의 국제경제적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의 전반에 걸쳐 국가표준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확보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표준계획법은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그 배경과 내용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I. 머리말

세계는 지금 급격히 바뀌고 있으며 WTO 체제하에서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WTO와 OECD에 가입함으로서 새로운 국제적 조류에 편입됨과 아울러 환경문제 등과 같은 인류의 문제에서 선진제국들과 함께 부담을 공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WTO 체제에 의해 세계는 무역장벽이 없는 개방의 추세로 가는 듯 하면서도, 유럽경제지역,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같은 지역경제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배타적 또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얼마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와 같은 협력기구를 통한 아시아와 유럽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국제적 환경이며, 냉전체제 하에서 개발의 변두리에서 소외되었던 동북아지역의 개발과 새로운 경제권으로서의 부상은 한국에 있어서는 또 다른 환경변화이다.

WTO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협정(TBT)에서는 자유무역 실현을 위한 기술적 장

벽의 제거를 중요한 목표로 삼아 표준의 채택, 적용, 적합성의 판정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표준에 대한 다국간 상호인정(MRA)의 추세도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국제무역과 경제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은 1998년도에 GNP가 443조 원에 이르고 정부예산이 154,184.7 십억원(중앙정부 110,313.9십억원)에 이르렀지만, 취약한 기술력, 낙후된 하부구조, 거시경제 정책의 문제 등으로 국제경쟁력과 신인도를 많이 잃었으며 현재 이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의 정부예산은 105조원 정도이고 경제와 과학기술의 공통 하부구조로 작용하는 국가표준 부문의 투자는 측정표준에 국한할 경우 485.22억원 이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에 비추어 한국의 국가표준체계는 측정표준, 성문표준, 참조표준이 서로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유지되어 왔고 표준업무를 포함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들 사이에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나 조화의 노력이 부족하였고 이것은 국제무역의 하부구조로서 작용하는 국가표준체계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의 장애요소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바로 국가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국가경제와 과학기술의 하부구조를 확고히 하고 국가표준체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하여 1980년도에 이미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는 헌법상에 국가표준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무조항을 신설했고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1999년 1월에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표준체계가 분산형의 낙후된 형태에서 벗어나 국제화와 개방화에 걸맞는 보다 선진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국가표준기본법과 동 시행령에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과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10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표준심의회를 중심으로 국가표준체계가 구성되어 강력한 종합조정기능을 가지게 되어 있으며, 제도의 정비와 관련기관의 기능분담에 대해 나타나 있다. 또한 중요사항으로서 정부는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하여 매 5년 단위로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성문표준, 참조표준 등 전 표준영역을 선도하고 그 기반을 제공하는 측정표준 분야의 대표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부처별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추진되던 국가표준 관련 사업이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되고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발표에서는 기본법의 제정배경, 내용,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포함한다.

II. 국가표준 기본법

국내표준 기본법 입법 취지

- ◇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는 헌법 제 127조 2항의 구체화
- ◇ 일관되고 선진화된 표준정책 구현 및 지원을 위한 “국가표준기본계획”的 수립 추진
- ◇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국가표준체계를 총괄관리
- ◇ 국제적 기준에 의한 교정기관/시험소 인정제도 운영
- ◇ 국가표준의 선진화를 위한 지원책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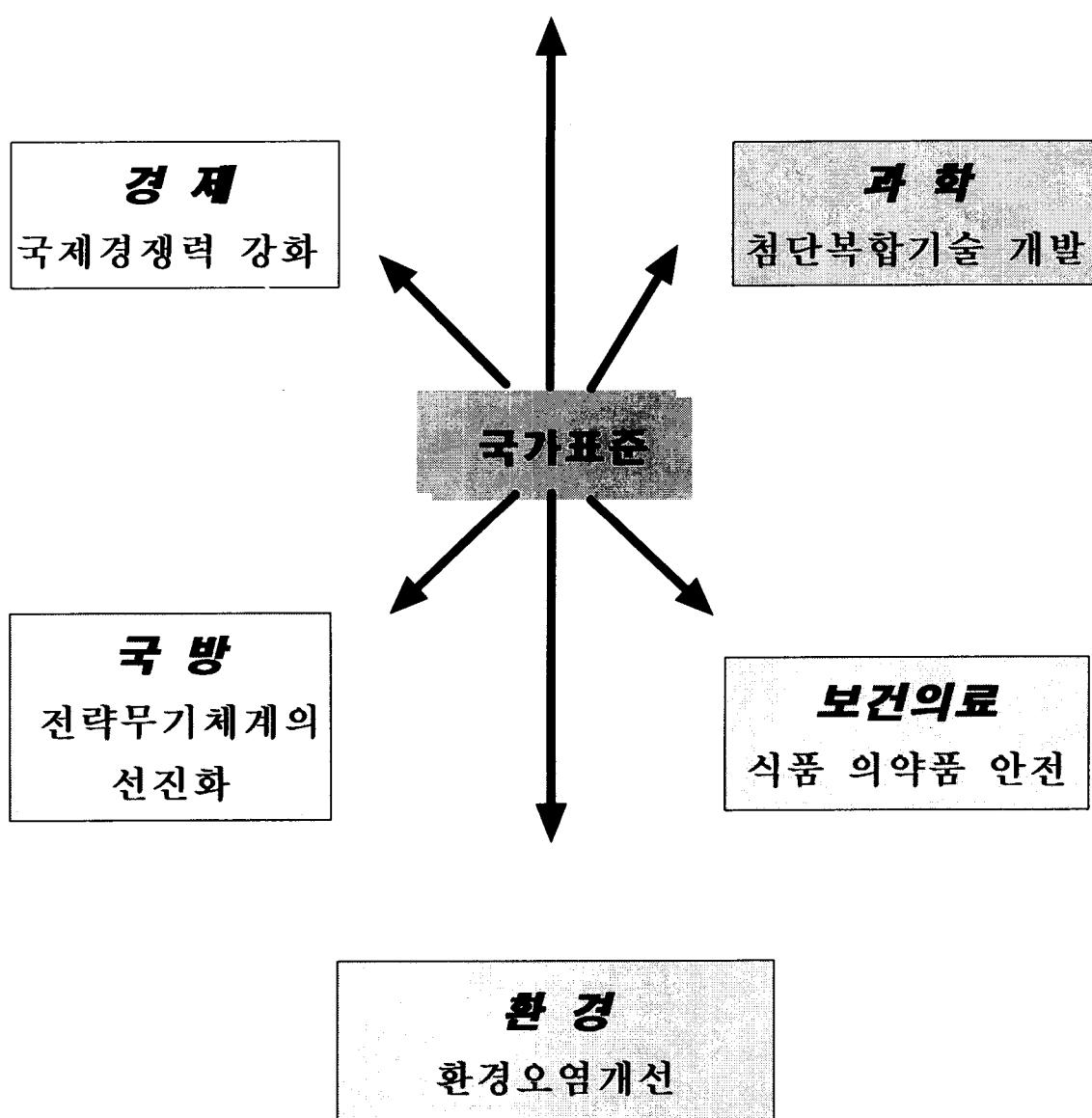
국내표준의 역사적 배경

1949. 4	상공부 중앙공업연구소(현 산자부 기술표준원 설립)
1959	국제조약인 「미터협약」에 가입
1961	「계량법」 제정 및 미터제도 도입
1962. 3	한국표준규격협회(현 한국표준협회) 설립
1973. 1	공업진흥청 설립
1975. 12	한국표준연구소(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립
1980. 10	국가표준제도 관련 헌법조항 신설 -헌법 118조 1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1992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정
1999. 1	국가표준기본법 제정(의원입법)
1999. 7. 1	국가표준기본법 발효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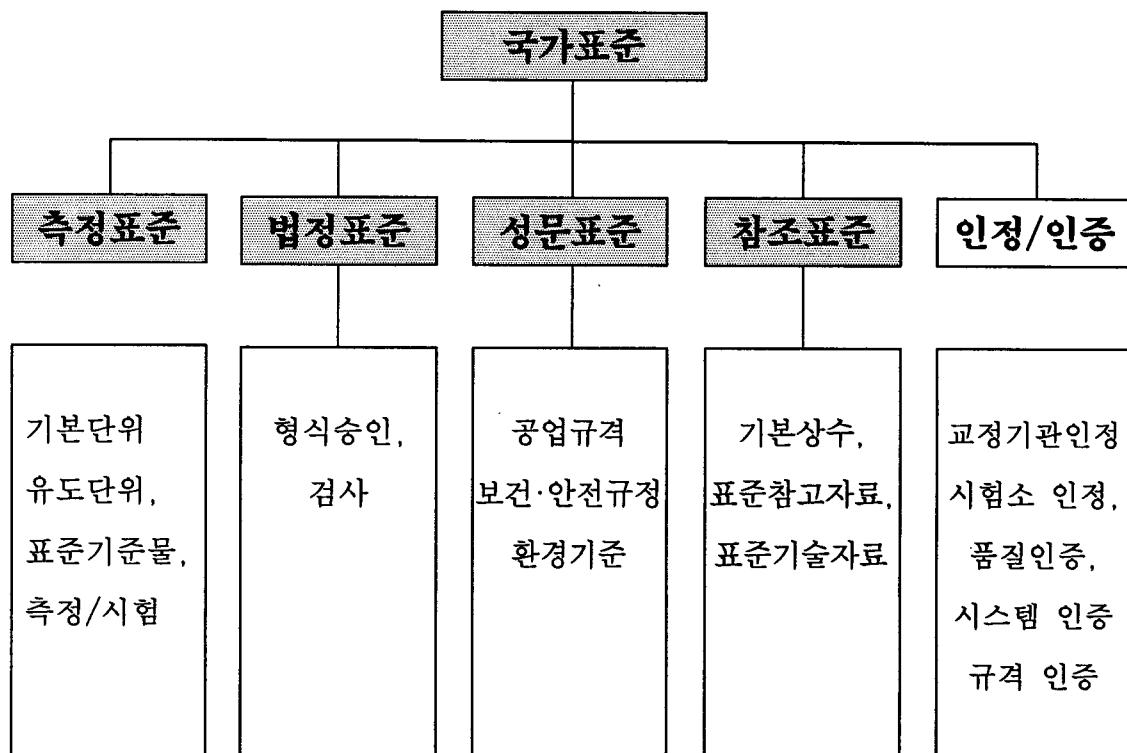
국가표준의 영역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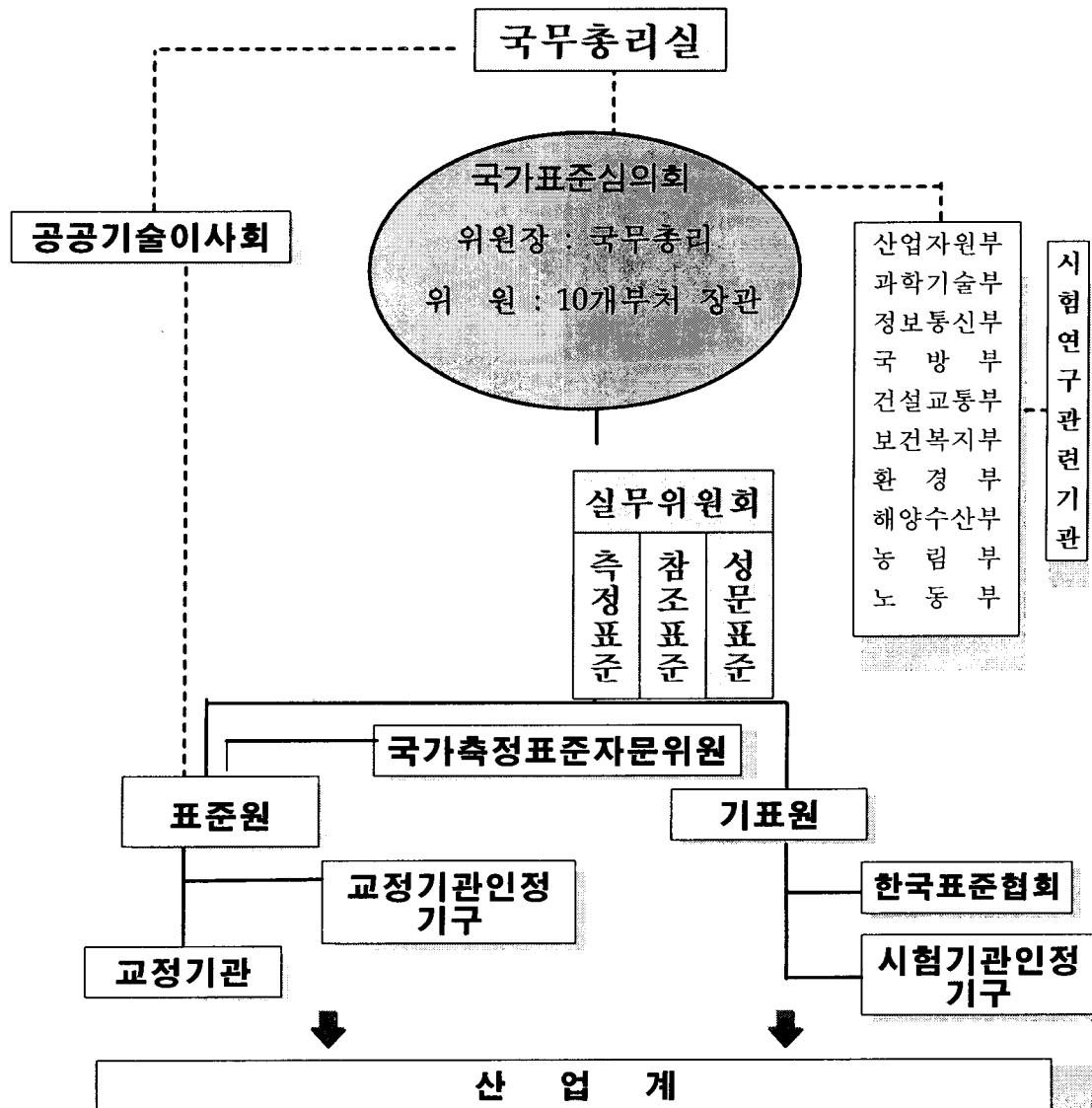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국가표준의 분류 및 주요내용



국가표준 행정체계



○ 업무조정

- 인정/인증 : 교정, 표준물질, 규격, 시험기관, 제품의 전 분야에 관련 되므로 각 분야의 최고책임기관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지고 운영
- 인력양성 : 여러 분야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고책임기관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지고 수행
- 국제협력 : 측정표준, 성문표준, 법정표준, 참조표준, 인정/인증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고 관련기관은 협조하도록 운영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의 체계 및 내용

체 계

국가표준기본법 : 전문 5장 31조와 부칙

시행령(입법예고) : 전문 26조와 부칙 3조

주요내용

- ① 정부의 책임부분 명시
- ② 국가표준심의회의 구성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9개부처장관을 위원으로 구성)
- ③ 국가표준 기본계획
- ④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기능 명시
- ⑤ 법정계량/성문표준/인정 및 인증 등
- ⑥ 예산지원
- ⑦ 인력 양성
- ⑧ 권한의 위임

국가표준기본법 제 7조와 제 27조 동 시행령 제 8조에 의하여 관련 부처에서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여야 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
- ◇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측정표준 확립유지
- ◇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 부합화
- ◇ 표준관련기술의 연구개발
-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 표준관련기구와의 협력
- ◇ 표준인력 양성
- ◇ 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
- ◇ 기타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

III .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1. 수립지침

현안문제의 해결과 제도의 선진화

2. 방법

- 1) 전문성 : 국내외 현황의 분석
- 2) 포괄성 : 표준의 모든 영역과 관련 10개 부처 현황분석 및 계획
- 3) 미래지향적

3. 추진전략

- 1) 행정부처 및 관련기관을 통한 자료수집 및 의견 수렴
- 2) 국제기구 활동의 분석
- 3) 소요예산의 총괄적 추정

IV . 맺음말

- 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은 표준체계의 선진화에 도움을 줄 것이고 국가인도 회복에 기여할 것임
- 앞으로 기본법의 우산아래서 국가표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자리를 잡을 것임.
- 기본법이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련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와 협의가 필요함
-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함